

●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0706)

제정 2023. 11. 21. 규정 제698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제10조의 5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 및 공사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구성) ① 선수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인력과 단원으로 구분한다.

② 지원인력은 단장, 부단장, 담당직원으로 구성하며, 단원은 감독·코치(이하 “지도자” 라 한다)와 선수로 구성되어 운영한다.

③ 단장은 운영부서 소관 본부장으로 하며, 부단장은 운영부서 소관 부서장, 담당직원은 운영부서 담당직원으로 한다.

④ 선수단의 구성 및 인원은 별표1과 같다.

⑤ 선수단 종목 신설 또는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장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선수단 종목 해체를 검토할 수 있다.

1. 전국체육대회 출전이 어렵거나 2년 이상 성적이 부진한 경우
2. 팀 운영(훈련, 대회출전 등)이 어려울 경우
3. 사회적 물의 등으로 공사의 명예 및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이 외의 지속적인 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4조(임무) ① 단장은 사장의 지시를 받아, 선수단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지도자, 선수) 및 담당직원을 관리·감독 및 보호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없는 경우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담당직원은 행정사항과 회계업무 등 선수단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④ 감독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당해 종목의 선수 발굴·육성과 훈련·대회참가, 체력관리 등 지도업무를 수행한다.

⑤ 코치는 훈련 및 대회참가, 체력관리 등으로 감독을 보좌하고, 감독이 없는 경우 감독의 역할을 수행한다.

⑥ 선수는 훈련참가 및 선수단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공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 ① 선수단 운영과 관련된 주요 안전을 심의 평가하여 선수단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5인을 포함한 총 7인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운영위원회 구성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2.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부위원장은 부단장이 된다.

4. 외부위원은 위원회의 목적과 활동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 및 관련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여 사장이 위촉한다.

5. 임명·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6.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의는 선수단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의사결정할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필요시 부위원장에게 직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신규영입선수 영입비 및 우수선수 육성비 책정에 관한 사항
2. 지도자 및 선수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선수 채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선수단 운영을 위하여 단장이 심의 또는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운영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및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사 「자문위원회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직장운동경기부 협의회) ① 선수단의 근무(훈련)환경 개선, 경기력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장운동경기부 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총 7인 이내로 구성한다.
2. 회장은 단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구성원은 단원의 구성을 고려하여 지도자, 선수 등을 포함하여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인권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외부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1. 선수단의 근무(훈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④ 회장은 협의회 구성원이 협의를 요구하면 협의회를 개최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1년에 1회 이상은 개최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인권보호 조치 등) ① 사장은 지도자 및 선수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성폭력 및 집단 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치 조치 등
- ② 단장은 단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2 장 입단계약(채용 및 임명)

제8조(선발 및 자격요건) ① 지도자 중 감독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며, 선발절차는 공사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세칙」의 채용절차를 따른다.

1. 해당 종목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전문스포츠지도사 이상의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5년 이상의 선수경력이 있거나 운동경기부에서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제1호에 규정된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② 지도자 중 코치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며, 선발절차는 공사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세칙」의 채용절차를 따른다.

1. 해당 종목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전문스포츠지도사 이상의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동법 제11조 제2항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종목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에 준하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자
 2. 3년 이상의 선수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독을 보좌하여 선수들을 지도할 수 있는 자
- ③ 선수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지도자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할 수 있다.

1. 최근 1년 이내 전국대회 이상 경기에서 상위(1~3위) 입상실적이 있는 자
 2. 경기력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자
 3.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되거나 등록되었던 선수
- ④ 선수단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정식 선수 신분으로 경기에 출전하면서, 소속 선수를 지도하는 일을 병행하는 플레잉코치를 단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플레잉코치 임기는 지정일로부터 선수 계약만료일까지로 하며, 단장은 플레잉코치 관련 필요성 및 역할 등을 검토하여 승인한다.
- ⑤ 지도자 공개모집시 심사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제9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수단의 단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체육단체 제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9.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
10. 징계로 해당 체육단체에서 영구제명을 받은 자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자로서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
12. 공사 「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 제4항에 따라 체육지도자와 채용계약(제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체육지도자에게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관련 증명서를 제출받거나 스포츠 윤리센터를 통하여 징계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직권면직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입단계약의 체결) ① 단원과 공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도자 및 선수는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③ 지도자의 계약기간은 2년(매년 1월 1일부터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 단위로 하고, 제23조에 따른 평가 결과로 계약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중도입사자의 경우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선수의 계약기간은 1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위로 하고, 제23조에 따른 평가 결과로 계약 여부 판단한다. 다만, 중도입사자의 경우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⑤ 임용 기간 동안 각종 경기대회 입상성적, 평소 훈련태도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제임용을 아니할 수 있다.

⑥ 계약기간 만료 등에 따라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을 기한 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입단계약 체결시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단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인사기록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구비서류) ① 단원의 입단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활용) 1부
2.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활용) 1부
3. 영입요청서(선수에 한함, 공개모집의 경우 생략함) 1부
4. 이력서 1부
5. 주민등록등·초본 각 2부
6. 가족관계증명서 2부
7.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 1부

8. 채용신체검사서 1부
9.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및 경기지도실적증명서(지도자에 한함) 각 1부
10.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선수에 한함) 각 1부
11. 경력(재적)증명서 1부
12. 이직동의서(선수 중 해당자에 한함) 1부
13. 통장사본 1부
14.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1부
15. 기타 단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12조(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① 사장은 단원과 계약 체결 시 계약에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관련 사전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
2. 영입비(또는 육성비) 및 연봉
3. 복무 및 기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 3 장 보수 등

제13조(보수의 지급) ① 단원의 보수는 연봉과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 단원의 연봉은 별표3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결정한다.
③ 단원의 연봉의 12분의 1을 매월 22일에 지급하며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 연봉 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단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대표 수당 : 국가대표로 선발 시, 선발된 날로부터 일할계산하여 매월 50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지도자는 제외한다.
2. 연차휴가수당, 가족수당 : 공사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선수단 운영비) ① 훈련에 참가한 단원에 대한 훈련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4의 기준에 따라 단원에게 지급한다. 단, 단원이 전지훈련(국가대표 소집훈련 포함) 또는 대회파견 시 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훈련비는 월단위로 익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전지훈련 또는 대회파견시 공사 「여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를 지급한다.
④ 단원의 대회파견시 선수단의 경기력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선수단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각 종목별 실업연맹가맹단체규정에 의한 연회비 및 선수등록비
2. 선수단에 필요한 피복 및 운동용품 지급
3. 선수단 합숙소전세금(보증금), 월차임, 전세권설정등기 및 말소등기 비용, 전세금 보증보험료, 중개수수료, 관리비, 비품 입자비용 등
4. 선수단 훈련 및 대회참가를 위한 항공료 및 차량지원 비용 등
5. 훈련성과 제고와 경기적응 훈련 등을 위해 유료시설을 훈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설 사용료

6. 그 밖에 선수단 훈련 또는 경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복리후생) ① 단원의 후생복지 증진 및 훈련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 「복리후생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및 「선택적복지제도 시행세칙」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를 지원한다.
② 지도자 및 선수의 부상처리를 위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한다.

제16조(우수선수영입·육성비) ① 선수단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선수 영입에 필요한 영입(육성)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교 및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실업팀 소속으로 국내외 주요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이 있거나 발전가능성이 인정되는 선수 대상
2. 도 소속 우수선수로 타시도로 유출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우수선수 영입(육성)비의 지급기준은 별표6에 따르며 해당 선수에게 직접 지급한다.
③ 우수선수 영입(육성)비를 지원받은 선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영입(육성)비를 공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중 타 팀으로 이적한 선수의 경우, 기 지급된 영입(육성)비의 2배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선수의 경우, 기 지급된 영입(육성)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질병, 부상이나 예상하지 못한 군입대 등의 사유로 단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해지한 선수의 경우, 기 지급된 영입(육성)비 중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기타 관련 문제 발생할 시 대한체육회 및 중앙경기단체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퇴직금) 단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자에게는 공사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 4 장 복 무

제18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위 유지의 의무 :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3. 겸직 금지 : 단원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에 한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
가. 국가대표 팀 지도자(전임 제외)
나. 중앙경기단체 임원
다. 경기도 경기단체 임원
라. 실업연맹체 임원
마. 기타 체육유관기관 임원 등
4. 그 밖의 사항 :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훈련시간 등) ① 단원은 계약한 날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 경기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단원의 훈련시간은 제9조에 따른 계약에 따른다. 다만 각종 경기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시 선수활동 특성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은 단장과 대회사정 및 근무여건 등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 훈련계획을 조정·변경할 수 있다.
- ③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각종 대회출전은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에도 훈련 및 대회출전에 임해야 한다. 지도자는 주말 및 공휴일 훈련 시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에 훈련과 대회 출전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훈련계획) ① 지도자는 훈련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 ②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종목별 연간계획(안)을 전년도 12월까지 작성·제출
 2.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상·하반기(6월·12월) 팀 전략보고서 작성·제출
 3.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월간 훈련계획은 매월 셋째주까지 사전 보고
 4.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훈련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말 제출
-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훈련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대회참가 및 전지훈련) ① 지도자는 대회참가 및 전지훈련 시 별지 제11호 및 제12호 서식에 따른 참가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선수에게 사전 공지 후, 참가 2주전까지 참가계획서를 단장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참가한다.

- ② 지도자는 대회참가 및 전지훈련 종료 후 7일 이내 별지 제13호 및 제14호 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휴가) ① 공사 「취업규정」 제25조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휴일로 하며, 휴일에 훈련 및 대회출전을 한 경우 그 다음의 정상훈련일을 지정하여 대체휴무를 실시한다.

- ② 단원의 휴가는 연차휴가, 특별유급휴가로 구분하며 단장은 단원이 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허가할 수 있다.
- ③ 연차휴가 및 특별유급휴가는 공사 「취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 ④ 전지훈련 기간 중 휴일은 휴무로 한다. 다만, 제14조 제3항에 따른 훈련비는 지급한다.
- ⑤ 제2항 내지 제3항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본다.
- ⑥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23조(평가) ① 지도자 및 선수는 매년 별표7에 따라 평가한다.

- ② 평가 결과는 연봉책정 및 우수선수 영입·육성비 지급 기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③ 평가 결과 50점 미만인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임용을 아니 할 수 있다.

제24조(선수단 합숙소) ① 선수는 출퇴근 및 훈련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제제한 없이 선수단 합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

- ② 입소기간은 선수의 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 ③ 선수단 합숙소의 이용은 선수 개인의 희망에 따라 신청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선수에게 합숙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훈련 및 대회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장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정하여 선수에게 합숙소의 이용을 명할 수 있다.

- ③ 선수가 합숙소를 이용하는 경우, 훈련시간 외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합숙소는 선수들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전세금(보증금), 월차임, 전세권설정등기 및 말소등기 비용, 전세금 보증보험료, 중개수수료, 합숙소관리비 등 합숙소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본적인 비용을 부담한다.

- ⑥ 그 밖에 합숙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사 「합숙소 운영 및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차량지원) ① 단원의 훈련, 대회참가 및 경기장 이동 등을 위하여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지도자는 사용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매월 말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선수단 차량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5 장 신분보장

제26조(신분보장의 원칙) 단원은 형의 선고정계나 이 규정이 정하는 사유를 따르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제27조(직권면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장은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단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선수단의 정원 개폐 또는 예산 감소 등에 따라 폐작감원이 되었을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않을 때
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앞으로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5.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6. 폭력·성폭력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비리 등의 행위를 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확정될 때(다만 학교폭력의 경우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

제28조(휴직) ① 단원이 3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휴직을 원하면 사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단, 휴직자에게 실시한 병기는 휴직기간으로 간주한다.

③ 휴직 중인 단원은 휴직기간에 그 사유가 소멸하였으면 10일 이내에 사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장은 바로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④ 단원의 휴직기간에 월급은 70%를 지급한다.

제29조(이적 동의) ① 단장은 단원의 타 기관으로의 이적 동의를 할 수 있다.

- ② 단장은 타 기관으로의 이적 동의 시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이적 동의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30조(단원초상권 및 광고행위에 대한 처리) ① 공사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선수활동 및 비선수활동과 관련한 경

- 기인의 초상, 영상, 성명 등을 방송, 보도, 광고(이하 ‘초상 등’)에 사용할 수 있고, 단원의 초상 등을 이용한 상품의 제작 및 판매를 할 수 있다.
- ② 단원은 공사의 광고, 홍보, 프로모션 활동 및 소재제작(사진촬영, 비디오촬영, 인터뷰녹음 등)에 참가해야 한다.
- ③ 단원은 다음의 각 항에 관해서 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익금 분배에 관한 사항은 공사와 단원 간의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1. TV/라디오 프로그램, 이벤트의 출연
 2. 선수의 초상 등의 사용 및 허락 (인터넷 포함)
 3. 공사 이외의 제3자의 광고 등에 관여
- ④ 단원은 매니지먼트 계약 체결 시 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상 별

제31조(임상보상금) 단원의 사기양양과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상위 입상한 선수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8의 기준에 따라 임상보상금(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2조(징계)**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 및 대회운영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배임, 회계부정, 직권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및 채용비리
 3. 폭력·성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포함한다) 및 「남녀고용평등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집단따돌림
 4. 승부조작 및 불법도박
 5. 훈련기간 중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6. 대회 부정 출전·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에 발생한 대회질서 문란 행위
 7. 제18조에 따른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8. 월 3일 이상 사전통보없이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
 9. 기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
- ② 징계의 종류, 효력, 절차 및 그 밖의 징계 관련 사항은 공사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단원의 징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관련 규정에 따라 체육계 간 정보공유를 위해 비위행위 사안 및 징계대상자를 대한체육회(공정체육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23.11.21.>

이 규정은 202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3조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구성

직 책		역 할
지 원 인 력	단 장	선수단 대표 및 운영 총괄
	부 단 장	단장보좌 및 유고 시 직무 대행
	담당직원	선수단 운영 관련 행정사항과 회계업무 등 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
단 원	지 도 자	팀 소속 선수의 관리 총괄 •선수의 발굴·육성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의 수립·시행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선수 합숙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선수관리에 대한 단장 보고 사항
		감독보좌 및 유고시 직무 대행
	선 수	훈련, 각종 경기대회 참가, 선수단 공식 대내외 행사참가 등

종목별 현황

구 분	종 목	계	감독	코치	선수	비고
1개팀		8	1	1	6	
1	레슬링(여)	8	1	1	6	

【별표 2(제8조 관련)】

서류전형심사표

○ 체육지도자(감독)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 점	득 점
기본자격	① 구비서류 () ② 응시자격 ()		
1. 전문성 (30점)	① 직종 (10점) - 최종 또는 직전근무 기준 ○ (민간/공무원 공통) 모집 종목 체육지도자(10), 기타 체육지도자(7) ○ (공무원) 체육직, 체육교육직 공무원(10) ○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체육분야 업무(7)	10	
	② (민간/공무원 공통) 채용분야 경력평가 (20점) ㉞ 지도경력 기간 (12점) ○ 9년 이상(12), 7년 이상(10), 5년 이상(8), 3년 이상(6), 1년 이상(4), 1년 미만(2) ㉟ 선수경력(상비군 포함) (8점) - <u>국가대표 선수로서</u> ○ 5년 이상(8), 4년 이상(7), 3년 이상(6), 3년 미만(5), 없음(4)	20	
2. 활동성 (20점)	① (민간/공무원 공통) 지도 선수단 유형 (12점) ○ 국가대표(12), 직장부(9), 대학부(6), 중·고등부 및 기타(3), 없음(1)	12	
	② (지도실적) 국제대회·전국체전·전국규모대회 입상횟수 (8점) - <u>최근3개년</u> ○ 6회 이상(8), 4회~5회(6), 2회~3회(4), 1회(2), 없음(1)	8	
3. 경력활용 계획 (50점)	① (민간/공무원 공통) 업무수행능력 (20점)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경력활용계획의 적정성	20	
	② (민간/공무원 공통) 경력활용도 평가 (20점) ○ 현업에 적용가능성	20	
	③ (민간/공무원 공통) 업무관련 교육, 자격증, Project 수행능력 (5점)	5	
	④ (민간/공무원 공통) 근무자세 및 발전가능성 (5점)	5	
계		100	

○ 체육지도자(코치)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 점	득 점
기본자격	① 구비서류 () ② 응시자격 ()		
1. 전문성 (30점)	① 직종 (10점) - 최종 또는 직전근무 기준 ○ (민간/공무원 공통) 모집 종목 체육지도자(10), 기타 체육지도자(7) ○ (공무원) 체육직, 체육교육직 공무원(10) ○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체육분야 업무(7)	10	
	② (민간/공무원 공통) 채용분야 경력평가 (20점) ㉞ 지도경력 기간 (12점) ○ 5년 이상(12), 4년 이상(10), 3년 이상(8), 2년 이상(6), 1년 이상(4), 1년 미만(2) ㉟ 선수경력(상비군 포함) (8점) - <u>국가대표 선수로서</u> ○ 5년 이상(8), 4년 이상(7), 3년 이상(6), 3년 미만(5), 없음(4)	20	
2. 활동성 (20점)	① (민간/공무원 공통) 지도 선수단 유형 (12점) ○ 국가대표(12), 직장부(9), 대학부(6), 중·고등부 및 기타(3), 없음(1)	12	
	② (지도실적) 국제대회·전국체전·전국규모대회 입상횟수 (8점) - <u>최근3개년</u> ○ 6회 이상(8), 4회~5회(6), 2회~3회(4), 1회(2), 없음(1)	8	
3. 경력활용 계획 (50점)	① (민간/공무원 공통) 업무수행능력 (20점)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경력활용계획의 적정성	20	
	② (민간/공무원 공통) 경력활용도 평가 (20점) ○ 현업에 적용가능성	20	
	③ (민간/공무원 공통) 업무관련 교육, 자격증, Project 수행능력 (5점)	5	
	④ (민간/공무원 공통) 근무자세 및 발전가능성 (5점)	5	
계		100	

면접전형심사표

○ 체육지도자(감독·코치 공통)

구 분		평점요소	배점기준 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무족
리더십 30점 (60%)	적극성	개혁 지향성 및 지속적 추진 의지	5	4	3	2	1
	통솔력	솔선수범, 실행력, 구성원 활용능력, 비전 제시 등	5	4	3	2	1
	협조성	조직구성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원활한 업무조정 및 설득	5	4	3	2	1
	탁망	책임감과 청렴한 품성	5	4	3	2	1
	판단력	현안과제의 정확한 진단과 정책대안 제시 능력	5	4	3	2	1
	문제해결력	현안문제, 조직 내·외 갈등과 분쟁 해결 능력	5	4	3	2	1
전문지식 15점 (30%)	논리/표현력	질문사항 핵심을 파악하고 있으며, 답변내용이 논리성이 있는지	5	4	3	2	1
	창의력	창의력, 의지력, 발전가능성	5	4	3	2	1
	기본지식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5	4	3	2	1
기타 5점 (10%)	태도 (3)		3			2	
	윤리의식 (2)		2			1	
총 50점			점				

【별표 3(제13조 관련)】

선수단 연봉 기준

○ 선수(최초 임용자)

구 분	등 급	등급기준(1항목 이상 충족)	연봉액
선수	S급	- 현 국가대표 선수 - 국제대회(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참가하여 입상한 실적 보유	70,000천원 초과
	A급	- 현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 - 최근 5년 이내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선수 - 국제대회(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참가하여 5위 이내 실적 보유 - 기타 국제경기연맹 주관 대회 입상한 실적 보유 - 최근 3년 내 전국체육대회 1위(금메달) 1개 이상 획득	70,000천원 이하
	B급	- 최근 5년 이내 국가대표 상비군 경력이 있는 선수 - 국제대회(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참가한 선수 - 최근 3년 내 전국체육대회 2위(은메달) 1개 이상 획득 - 최근 3년 내 전국규모대회 1위(금메달) 1개 이상 획득	60,000천원 이하
	C급	- 최근 3년 내 전국체육대회 3위(동메달) 1개 이상 획득 - 최근 3년 내 전국규모대회 2위(은메달) 1개 이상 획득	50,000천원 이하
	D급	- 최근 3년 내 전국체육대회 6위권 이상 실적 보유 - 최근 3년 내 전국규모대회 3위(동메달) 1개 이상 획득 - 경기력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 -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되거나 등록되었던 선수	40,000천원 이하

- 개인별 경력, 성실도, 기여도 및 종목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봉이 상하향 조정될 수 있음
-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선수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 적용한 등급으로 연봉을 지급할 수 있음
-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입상실적은 일반부 입상 실적만 인정함

○ 선수(계속 근로자)

구 분	등 급	평가점수	연봉인상률
선수	S급	91 ~ 100	7% 이내
	A급	76 ~ 90	3% 이내
	B급	66 ~ 75	동결
	C급	51 ~ 65	-3% 이내
	D급	50점 이하	-7% 이내

- [별표7] '선수단 평가 기준'에 따른 점수로 등급을 구분
- 개인별 경력, 성실도, 기여도 및 종목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봉이 상하향 조정될 수 있음

○ 지도자(최초 임용자)

구 분	등 급	등급기준(2항목 이상 충족)	연봉액	
			감독	코치
지도자	S급	- 국가대표팀 지도 경력 보유 - 국제대회(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참가하여 입상한 지도실적 보유 - 9년 이상 실업팀 지도 경력 보유 - 9년 이상 초·중·고·대 지도 경력 보유 - 최근 3년 내 전국체육대회 다관왕 전력의 지도 실적 보유	70,000천원 초과	55,000천원 초과
	A급	- 기타 국제경기연맹 주관 대회 입상한 지도실적 보유 - 국제대회 참가하여 입상한 지도실적 보유 - 7년 이상 실업팀 지도 경력 보유 - 7년 이상 초·중·고·대 지도 경력 보유 - 최근 3년 내 전국체육대회 1위(금메달) 지도실적 보유	70,000천원 이하	55,000천원 이하
	B급	- 5년 이상 실업팀 지도 경력 보유 - 5년 이상 초·중·고·대 지도 경력 보유 - 최근 3년 내 전국체육대회 2위(은메달) 지도실적 보유 - 최근 3년 내 전국규모대회 1위(금메달) 지도실적 보유	60,000천원 이하	50,000천원 이하
	C급	- 3년 이상 실업팀 지도 경력 보유 - 3년 이상 초·중·고·대 지도 경력 보유 - 최근 3년 내 전국체육대회 3위(동메달) 지도실적 보유 - 최근 3년 내 전국규모대회 2위(은메달) 지도실적 보유	50,000천원 이하	45,000천원 이하
	D급	- 3년 미만 실업팀 지도 경력 보유 - 3년 미만 초·중·고·대 지도 경력 보유 - 최근 3년 내 전국규모대회 3위(동메달) 지도실적 보유 - 해당 경기종목 선수 출신으로 충분한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0,000천원 이하	40,000천원 이하

- 개인별 경력, 성실도, 기여도 및 종목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봉이 상하향 조정될 수 있음
-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지도실적은 일반부 지도실적만 인정함

○ 지도자(계속 근로자)

구 분	등 급	평가점수	연봉인상률
지도자	S급	86 ~ 100	7% 이내
	A급	76 ~ 85	3% 이내
	B급	66 ~ 75	동결
	C급	51 ~ 65	-3% 이내
	D급	50점 이하	-7% 이내

- [별표7] '선수단 평가 기준'에 따른 점수로 등급을 구분
- 개인별 경력, 성실도, 기여도 및 종목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봉이 상하향 조정될 수 있음

【별표 4(제14조제1항 관련)】

훈련비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훈련비	국내출장 여비 중 일비 및 식비의 70%

- 전지훈련, 대회파견, 휴가, 국가대표 훈련 참가할 경우 훈련비 지급 제외

【별표 5(제14조제4항 관련)】

격려금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격려금	대회파견시 참가인원 1인당 최대 50,000원 지급

－ 지급기준 한도 내에서 종목팀별로 실비 정산

【별표 6(제16조 관련)】

우수선수 영입·육성비 지급기준

구 분	등 급	등급기준(1항목 이상 충족)	지급액
지도자	S급	－ 현 국가대표 선수 － 국제대회(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참가하여 입상한 실적 보유 － 최근 3년 내 전국체육대회 200점 이상 획득(3년 평균)	80,000천원 초과
	A급	－ 현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 － 최근 5년 이내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선수 － 국제대회(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참가하여 5위 이내 실적 보유 － 기타 국제경기연맹 주관 대회 입상한 실적 보유 － 최근 3년 내 전국체육대회 1위(금메달) 1개 이상 획득 － 최근 3년 내 전국체육대회 150점 이상 획득(3년 평균)	60,000천원 이하
	B급	－ 최근 5년 이내 국가대표 상비군 경력이 있는 선수 － 국제대회(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참가한 선수 － 최근 3년 내 전국체육대회 2위(은메달) 1개 이상 획득 － 최근 3년 내 전국규모대회 1위(금메달) 1개 이상 획득 － 최근 3년 내 전국체육대회 100점 이상 획득(3년 평균)	40,000천원 이하
	C급	－ 최근 3년 내 전국체육대회 3위(동메달) 1개 이상 획득 － 최근 3년 내 전국규모대회 2위(은메달) 1개 이상 획득 － 최근 3년 내 전국체육대회 50점 이상 획득(3년 평균)	20,000천원 이하

- － 상기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 개인별 경력, 성실도, 기여도 및 종목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입·육성비가 상하향 조정될 수 있음

【별표 7(제23조 관련)】

선수단 평가 기준

○ 선수

구 분	평가지표	평가기준	배점	
정량적 평가 (70점)	국제대회 (10점)	합계	100점	
		국가대표 선수로 국제대회 출전하여 1위 입상	10	
		국가대표 선수로 국제대회 출전하여 2위 입상	8	
		국가대표 선수로 국제대회 출전하여 3위 입상	6	
	전국체육대회 (50점)	국가대표 선수로 국제대회 출전	4	
		[토너먼트]	전국체전 출전하여 1위 입상	50
			전국체전 출전하여 2위 입상	45
			전국체전 출전하여 4강 입상	40
			전국체전 출전하여 8강 입상	35
			전국체전 출전	30
		[비 토너먼트]	전국체전 출전하여 1위 입상	50
			전국체전 출전하여 2위 입상	45
			전국체전 출전하여 3위 입상	40
			전국체전 출전하여 4~6위 입상	35
			전국체전 출전	30
	전국규모대회 (10점)	[토너먼트]	전국규모대회 출전하여 1위 입상	10
			전국규모대회 출전하여 2위 입상	8
			전국규모대회 출전하여 4강 입상	6
			전국규모대회 출전하여 8강 입상	4
		[비 토너먼트]	전국규모대회 출전하여 1위 입상	10
			전국규모대회 출전하여 2위 입상	8
			전국규모대회 출전하여 3위 입상	6
			전국규모대회 출전하여 4~7위 입상	4
정성적 평가 (30점)	다면평가 (5점)	단위간 다면평가 결과 점수 환산	0~5	
	재능기부 및 사회공헌활동 (5점)	3회 이상	5	
		2회	3	
		1회	1	
		0회	0	
	성실 및 성장성 (20점)	자기 달성목표 수립 달성을 위한 계획 및 추진력	4	
		정해진 훈련일정 준수와 훈련에 대한 집중도	4	
		건강한 선수 생활과 경기체력 유지 발전을 위한 노력	4	
		자기 운동 기술과 전문 체력의 장단점 파악과 보완의 정도	4	
선수 경기능력의 성장 및 발전도		4		

- 대회 입상실적이 여러 개인 경우, 최고 입상실적 1개만 반영함
- 대회 입상실적은 일반부 입상 실적만 인정함
- 다면평가 방식 및 절차 등은 단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 재능기부 및 사회공헌활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인정함
- 선수의 정성적 평가 중 '성실 및 성장성'은 감독과 코치가 각각 평가한 점수를 적용함(점수 적용 비중은 감독 50%, 코치50%로 함)

○ 지도자

구 분	평가지표	평가기준	배점
합계			100점
정량적 평가 (70점)	선수입상실적 (60점)	해당 종목선수 정량 평가점수(70점 만점)를 산술평균하여 6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	0~60
	지도자 경력 (10점)	지도자 경력 10년 이상	10
		지도자 경력 7년 이상	7
		지도자 경력 5년 이상	5
		지도자 경력 3년 이상	3
		지도자 경력 3년 미만	2
정성적 평가 (30점)	다면평가 (5점)	단위간 다면평가 결과 점수 환산	0~5
	재능기부 및 사회공헌활동 (5점)	3회 이상	5
		2회	3
		1회	1
		0회	0
	리더십 및 전문지도능력 (20점)	선수들 개개인의 달성목표 수립 및 달성을 위한 노력의 정도	4
		정해진 계획의 실천 및 훈련일정 준수와 훈련 참여도	4
		선수별 운동기술 및 전문체력에 대한 전문지도 능력의 정도	4
		경기분석 능력 및 운동기술, 전략 전술 지도 능력의 발전도	4
		선수 독려와 격려, 사기진작 및 지속적 동기유발 능력의 정도	4

- 다면평가 방식 및 절차 등은 단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 재능기부 및 사회공헌활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인정함
- 지도자의 정성적 평가 중 '리더십 및 전문지도능력'은 코치평가의 경우 부단장과 감독이 각각 평가한 점수를 적용하고, 감독평가의 경우 부단장이 평가한 점수를 적용함(코치평가지 점수 적용 비중은 부단장 50%, 감독 50%로 함)

【별표 8(제31조 관련)】

입상보상금 지급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보 상 금 기 준 액		
		1 위	2 위	3 위
올림픽대회		30,000	25,000	20,000
아시안게임		15,000	10,000	7,000
세계선수권대회	4년 개최	20,000	15,000	10,000
	1~2년 개최	10,000	7,000	5,000
월드컵, 아시안선수권, U대회		3,000	2,000	1,500
기타 국제대회(10개국 이상)		1,500	1,000	700
전국체육대회		3,000	2,000	1,000
전국규모대회		700	500	300
신기록 수립 및 대회 MVP	세계 신기록 (세계 타이)	10,000 (8,000)		
	아시아 신기록 (아시아 타이)	7,000 (5,000)		
	한국 신기록	5,000		
	대회신기록	500		
	전국체전 MVP	5,000		

- 동일대회에서 2개(세부)종목 이상 입상할 경우 최고 입상실적 1개로 한정하여 지급함
- 미규정 대회 입상시 대회의 규모, 성격 등을 고려하여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 가능
- 체육지도자 중 지도자 자격으로 참가할 경우는 대회 최고 수혜 선수와 동일하게 지급하고, 소속 선수만 출전한 경우는 최고 수혜선수의 50%만 지급함

【별지 1호 서식(제9조 관련)】

선수단 입단에 관한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성 명 :
생년월일 :
종 목 :
직 위 :

위 본인은 GH 직장운동경기부 입단함에 있어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입단 무효를 비롯한 만형사상 법률적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2호 서식(제10조제1항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근로계약서

경기주택도시공사 (이하 “공사” 라 한다) 와 _____ (이하 “단원” 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공사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단원이 단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공사는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 등 금품을 지급하는데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 간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공사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의거하여 전문체육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부로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 제2조제13호에 따라 전문선수 및 지도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② “단원”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지도자 혹은 전문선수로 등록한 자로서, 공사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근로조건 등) ①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 까지로 하며, 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공사와 단원의 모든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② 공사가 대회 규정, 직장운동경기부 구성 요건, 선수 자격 등 대회 참가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하는 약관 또는 계약을 규정(경기인 등록규정 등)하여야 하는 경우, 본 계약보다 해당 약관 또는 계약이 우선한다.

(확인 : 단원 _____ 서명)

제4조(담당업무 및 단원활동의 범위) ① 단원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공사와 약정한 각종 대회·훈련 및 교육, 회의 등의 참가
2. 공사와 약정한 광고 및 미디어 출연 등 영리활동(단원은 공사의 사전동의 없이 광고 및 미디어 등 참여불가)
3. 공사와 약정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부대활동(단,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광고 및 홍보 활동, 사회봉사 및 공익 협찬, 팬서비스 활동, 시상식 등 제1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근무지(훈련장소) : _____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무일은 월요일~금요일까지 주 5일로 정하고 근무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로 한다.

② 휴게시간은 12:00~13:00(1시간)으로 하며 중식시간을 포함한다.

③ 단원 담당업무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공사는 단원과 상호 협의 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대회사정 및 근무여건 등에 따라 이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④ 공사는 단원 동의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업무의 특성상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훈련장소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훈련장소 밖에서 근무한 시간은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본조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단원대표(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공사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단원이 근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의 승인·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공사의

승인·동의를 득하지 않고 실시한 임의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확인 : 단원 _____ 서명)**

⑦ 공사와 단원은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공사와 선수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를 실시한다.

(확인 : 단원 _____ 서명)

제6조(유급휴일) ① 다음 각 호의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3. 기타 정부 또는 공사에서 지정하는 날

② 공사는 업무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훈련 및 대회출전)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공사는 단원에게 본 계약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단원의 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단원에게 활동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대가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연봉의 12분의 1), 각종 국내외 대회 참가 상위입상에 따른 포상금, 그 외 영리활동 등으로 얻는 수익 중에서 분배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 것 등으로 구성된다.

③ 공사는 단원이 대회참가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환경을 조성·관리한다.

④ 공사는 단원이 단원으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단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될 경우 단원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단원이 공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단원으로부터 성폭

력,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⑥ 공사는 단원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단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단원에게 폭력·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제8조(단원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단원은 자신이나 다른 단원에 대한 공사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신체적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② 단원은 훈련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공사에 제시할 수 있다.

③ 단원은 본 계약에 의해 제공되거나 이용하게 되는 자산 및 시설을 계약종료 시 공사에 반환한다.

④ 단원은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단원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제4조제1항의 단원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 공사와 협의되지 않은 단원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단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단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단원에게 폭력·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소속 또는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⑥ 단원은 계약기간 중 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본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공사 내의 다른 단원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단원은 공사가 단원에게 지급한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을 지시받은 경우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단,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또는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급여) ① 단원의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매월 22일 단원이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1. 월 봉급(연봉의 12분의 1) : _____ 원
(연봉 : _____ 원)

2. 그 밖의 제 수당(국대수당, 연차휴가수당, 가족수당)

② 공사는 본 계약기간 동안 단원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제1항의 급여를 지급한다.

③ 공사는 단원에게 급여를 제1항에서 정한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급사유가 다른 지급액은 그 각 조건이나 지급사유 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제4조제1항의 활동을 하지 아니한 기간(시간)에 대해

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대회참가활동으로 인한 상금) ① 단원의 사기양양과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대회에서 상위 입상한 단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입상보상금(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입상보상금(포상금) 지급 기준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영리활동) 단원의 영리활동 참가로 인해 공사가 수익을 얻는 경우, 공사와 단원은 그 수익에 대하여 분배여부 및 분배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다.

제12조(비용의 부담 등) ① 공사는 권한 및 예산 범위 내에서 단원의 단원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단원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단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와 단원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13조(사회보험 등의 공제) ① 공사는 단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이 정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원의 요청에 의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소급분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단원이 이를 부담한다.

제14조(지식재산권 등) ① 공사는 계약기간 중 단원의 본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단원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공사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단원의 단원활동 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공사와 단원은 별도 합의를 통하여 계약기간 동안 지식 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공사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단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단원과 합의를 통해 계약 종료 후에도 단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공사에서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단원의 명예나 기타 단원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연차유급휴가) ① 단원의 근속년수, 출근율 및 개근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공사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수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무일에 휴무하게 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위 규정된 사항 외에 연차유급휴가와 기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등에 따른다.

제16조(퇴직금) ① 공사에서 1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단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본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와 단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변경된 계약서는 변경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

고, 공사와 단원이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 ① 공사와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사의 사실상의 파산,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 건 계약의 이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3. 선수단 정원개폐, 예산감소 등으로 선수단 감축 또는 해체가 불가피한 경우
4. 단원이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공사의 정당한 지시에도 단원이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단원의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공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단원이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등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음주운전,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도자 또는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7.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경기 또는 훈련시간에 장소를 무단이탈한 경우
8. 체육지도자 및 선수로서 실적이 부진하거나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한 경우
9. 본인이 원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10. 지휘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하거나 훈련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11.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경우
12.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3.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및 관련 각종 제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② 공사 또는 단원은 어느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1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위 기간 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③ 공사 또는 단원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제1항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9조(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단원 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명백히 단원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단 공사는 단원에게 잔여 급여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유지) 공사와 단원은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21조(개인정보보호) 공사는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단원의 개인정보를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22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단원과 공사가 상호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 제23조(부속 합의)** ① 공사와 단원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를 작성할 수 있다.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 ② 제17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24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공사와 단원이 상호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단체(사용자)	
주소	
회사명	
대표자	(인)

직장운동경기부 단원(근로자)	
주소	
생년월일	
직 위	
성 명	(인)

(뒷 쪽)

(앞 쪽)

[illegible][illegible]

【별지 4호 서식(제11조 관련)】

자기 소개서

지원분야와 관련된 본인의 보유 역량을 기술하십시오.

직무수행을 통하여 문제해결능력을 발휘한 경험이 있다면 기술하십시오.

※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을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
※ A4용지 3매 이내로 본인이 직접 작성 바랍니다.
(대리 작성, 허위 작성 시에는 합격 취소 등 불이익 부과)

본인은 상기 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별지 5호 서식(제11조 관련)】

직무수행 계획서

지원분야와 관련된 직무수행계획을 기술하십시오.

※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을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
※ A4용지 5매 이내로 본인이 직접 작성 바랍니다.
(대리 작성, 허위 작성시에는 합격 취소 등 불이익 부과)

본인은 상기 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별지 6호 서식(제19조 관련)】

휴일 훈련 계획서

선 수 단			
훈 련 명			
훈련기간			
훈련장소			
훈련인원			
훈련목표			
훈련내용			
그 밖의 사항			
작성일		작 성 자	○○팀 지도자 (인)

【별지 7호 서식(제20조제2항제1호 관련)】

연간 운영 계획안

1. 종목 :
2. 팀 운영 계획

구 분	금년도(0000년)	전년도(0000년)	비 고
인 원	명	명	
지도자	- 감독 : 000 - 코치 : 000	- 감독 : 000 - 코치 : 000	
선 수	- 000,	- 000,	

※ 신규 선수 있을 경우 신상기록 및 경기실적증명서(전년도 전국동·하계체전 포함) 첨부

3. 월간 훈련계획

월 별	내 용	비 고
1월	00선수권 대회 출전 준비	
2월	△△집중 강화 훈련 등	
3월		
4월		
5월		
6월		
7월	00선수권 대회 출전 준비	
8월	△△집중 강화 훈련 등	
9월		
10월		
11월		
12월		

4. 주간 훈련계획

구 분	새 벽	오 전	오 후
훈련시간	06:00~07:00	10:00~12:00	17:00~19:00
훈련장소			
월	스트레칭 조강(400m×8) 유연성 운동 복근운동 50회×2	스트레칭, 후투웍 투맨앵게이지 레슨, 복근운동 정리체조	준비체조 후투웍 렛슨 게임
화			
수			
목			
금			

5. 대회출전 계획(금년도 출전할 대회 작성)

순번	월	대 회 명	비 고
1	4월	00선수권 대회	
2	4월	□□ 대회	
3			
4			
5			
6			
7			
8			
9			

6. 중요대회(최대 6개) 목표치(예상점수)

순번	월	대 회 명	예상점수	비 고
1	4월	00선수권 대회		
2	4월	□□ 대회		
3				
4				
5				
6				

7. 전년도 출전대회 개인별 성적

순 번	성 명	대 회 명	기 간	경기 실적	비 고
1		△△△대회	4. 25 ~ 4. 26	마라톤 2위	
2					
3					
4					
5					
6					
7					
8					

8. 금년도(0000년) 제000회 전국동·하계체전 예상 성적 및 전략

- 예상성적(세부종목별) :
 - 전략 및 대비(준비) 사항
-

【별지 8호 서식(제20조제2항제2호 관련)】

-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장운동경기부 - 00팀 상(하)반기 전략보고서			
1. 구성현황 - 총인원 : - 성 명 :			
2. 선수 개인별 평가			
구분	성 명	상(하)반기 대회출전 실적	평가내용
1		000 대회 1위 000 대회 1위	
3. 상(하)반기 운영 현황 - 장 점 : - 단 점 :			
4. 하반기(차년도) 팀 육성 방향 -			
5. 지도자(감독 및 코치) 종합의견 -			
6. 기타사항 -			
위와 같이 0000년도 상(하)반기 00팀 전략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00팀 지도자 : (인)			

【별지 9호 서식(제20조제2항제3호 관련)】

(월) 훈련계획

종 목		훈련인원	
훈련기간		훈련장소	
훈련목표			
중점사항			

전지훈련 계 획 (있음/없음)	기 간		장 소	
	목 적			

대회참가 계 획 (있음/없음)	대 회 명			
	참가종목			
	기 간		장 소	
	예상성적			

기 타 요청사항				
-------------	--	--	--	--

작 성 일		작 성 자	직위 : 감독 성명:	(인)
-------	--	-------	-------------	-----

【별지 10호 서식(제20조제2항제4호 관련)】

【별지 11호 서식(제21조제1항 관련)】

○ ○ 팀 훈 련 일 지

		년	월	일	요일	날씨				
훈 련 인 원	구	분	계	지도자	선 수	훈 련 참 가 자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훈련인원									
	불참인원									
	불참명단 및 사유									
훈 련 장 소										
훈 련 내 용	훈련 시간	오전								
		오후								
	휴게 시간	오전								
		오후								
오 전	○ 시간 :									
오 후	○ 시간 :									
훈 련 평 가						특 기 사 항				

○○팀 대회출전 계획보고서

□ 개요

대회명	
대회일시 및 장소	0000.00.00 ~ 0000.00.00 / 0000
파견기간(일수)	0000.00.00 ~ 0000.00.00 (0박0일)
출전인원	총 00인 지도자 : 000, 000 선수 : 000, 000, 000, 000, 000

□ 출전 목적 및 계획

위와 같이 대회 출전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년 ○월 ○일

○○팀 지도자 ○○○

【별지 12호 서식(제21조제1항 관련)】

○○팀 전지훈련 계획보고서

□ 목적 및 기대효과

○ 목적 :

○ 기대효과 :

□ 훈련장소 :

□ 훈련기간 :

□ 훈련인원 :

<○○팀 훈련 참가 인원>			
구분	직위	이름	비고
1	코치		
2	선수		
3			
4			
5			

□ 숙소 :

□ 전지훈련 일정

일자	훈련시간	내용	비고

□ 세부훈련 계획(안)

일자	시간	훈련방법	비고

위와 같이 ○○팀 전지훈련 계획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팀 지도자 ○○○

【별지 13호 서식(제21조제2항 관련)】

○○팀 대회출전 결과보고서

□ 개요

대회명	
대회일시 및 장소	0000.00.00 ~ 0000.00.00 / 0000
파견기간(일수)	0000.00.00 ~ 0000.00.00 (0박0일)
출전인원	총 00인 지도자 : 000, 000 선수 : 000, 000, 000, 000, 000

□ 대회 결과

위와 같이 대회 출전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0000년 0월 0일
○○팀 지도자 000

【별지 14호 서식(제21조제2항 관련)】

○○팀 전지훈련 결과보고서

- 훈련장소 :
- 훈련기간 :
- 훈련인원 :

<○○팀 훈련 참가 인원>			
구분	직위	이름	비고
1	코치		
2	선수		
3			
4			
5			

□ 전지훈련 결과

구분	선수명	세부종목	전지훈련 결과	
			중점훈련사항	훈련결과(성과)
훈련결과				

□ 훈련 결과 분석 및 성과

□ 전지훈련 총평

□ 기타사항

-
-

위와 같이 ○○팀 전지훈련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팀 지도자 ○○○

【별지 제15호 서식(제25조 관련)】

차량운행일지

차 량 운 행 일 지						
차량번호			운행일자			
운 행 사 항	운 행 계	km	유 류 수 불 현 황	()일 급유	ℓ 원	
	전일 누계	km		()월 급유	ℓ 원	
	금일 누계	km			원	
승차자	용 무	경유지 및 목적지	시간		운행	
			출발	도착	km	
차 량 점 검 · 수 리 내 역						

【별지 16호 서식(제29조 관련)】

이 적 동 의 서			
1. 인적사항			
종 목		세부종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2. 근무현황			
소 속		직 위	
근무기간			
위 선수의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으로의 이적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지도자 동의란 (인) 경기주택도시공사장 (인)			